

청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5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557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20 선고 2023가소2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 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20. 선고 2023가소20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보트 엔진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트 엔진의 인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보트 엔진(이하 '원고 소유 엔진'이라 한다)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보트 엔진(이하 '피고 소유 엔진'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2. 6. 15. 100만 원, 2022. 6. 16.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2. 6. 15. 원고의 보트가 위치한 충주시 C에 방문하여 원고의 보트에서 원고 소유 엔진을 탈착한 후 피고 소유 엔진을 원고의 보트에 부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 엔진과 교환한 피고 소유 엔진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부품만을 보낸 후 피고 소유 엔진을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및 피고 소유 엔진과 교환한 원고 소유 엔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 소유 엔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 엔진에 존재하는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택배를 이용하여 원고의 보트에 피고 소유 엔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위 부품을 이용하여 원고의 보트에 피고 소유 엔진을 연결할 수 있는 충주시 근방 보트 엔진 수리 업체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22. 6. 24.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며 원고에게 피고가 수일 내로 다시 충주시에 방문하여 원고의 보트에 피고 소유 엔진을 연결해 줄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통화 당일 충주시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제안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유 엔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도형석

판사이종인

판사전보람

별지